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50025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5.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3.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13. 접수 제4192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2,313,8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313,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74165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C의 채권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C의 부(父) D이 1970. 4.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인데, 2020. 8. 24. D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9)와 자녀인 C, E, F(법정상속분 각 2/9)이 고인을 상속하였다.

다. 위 상속인들은 2020.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0.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1. 7. 30.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만 원, 채무자 G, 채권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20. 10. 19.자 해지를 원인으로 2020. 10. 2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1.의 가.항 기재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 I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무렵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은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

피고는 C이 일찍이 분가하여 떨어져 살았던 탓에 C의 채무상황 등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 상속분에 상당한 12,313,846원[= (이 사건 부동산의 추정가액 5,772만 원 - H 근저당권의 추정 피담보채무액 2,307,692원) × C 상속지분 2/9,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하다고 다룬다.

2) 원물반환의 가능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한편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것은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자인하는데다가, 위 등기가 약 40년 전에 설정된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아래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별지(부동산목록)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72.7㎡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조적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38.35㎡

끝.

